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참조12)

2020. 11. 24.(화) 10:00

본 회 의 장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 목 차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교육체육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박영애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조정식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정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책과 조례발의 준비, 시민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영 애

#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1월 2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제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제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세대 전출에 따른 통반 통폐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구역 조정 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조정하고 장학금 중복 지급 및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안 제2조 제1항 중

“1년 이상 은속한 통장의 자녀”를

“통장의 자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권한 및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안 제9조 제1항 중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를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고,” 로 하고,

-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정수의 100분의 60 이내” 를

“정수의 100분의 60 이상” 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8항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 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로 하고,



- 안 제10조 제1항 중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를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자치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로 하고,

- 안 “제10조 (두 번째) 제2항” 을

“제10조 제3항” 으로 하고,

- 안 “제10조 제3항” 을

“제10조 제4항” 으로 하며,

- 안 제14조 제7항 중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로 하고

- 안 제15조 제4항 중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축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며 성남시 체육발전에 앞장서고자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은

성남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 두 번째,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제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 세 번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근직인 관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고, 예산 집행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 회계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7조의2(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장) 종합체험관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수탁기관간 협의로 정한다.” 로 하고,

“안 제13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 네 번째,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 진입로 부지 임대권 설정 문제,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설치 예정인 수소전기충전소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설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을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그리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등  
10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 여섯 번째,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  
사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 계약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등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 일곱 번째,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성남시에 서식하는 야생 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제2항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 여덟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고시를 조례로 제정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유지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 열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측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 열한 번째,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조항 개정 및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 열두 번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코자 하는 것으로 “채택” 하였으며,

○ 열세 번째,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물관리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물의 안정적인 확보, 재해 예방 등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2항 제7호 중  
“ 「하천법」 제6조” 를 “ 「하천법」 제25조” 로  
오자(誤字)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 열네 번째,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 관련 민원 등을 반영  
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 용 삼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남용삼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차이를 없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우리시 거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9.1.15.일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성남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7조 제3항 중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의 직접 운영에  
따라 기존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한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선창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 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안은 중원구 중앙동 배수장에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단어가 한정되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으로 이를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조정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박영애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 응 삼



#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체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등

총12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수립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 하였습니다.

○ 두번째, 이기인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정 윤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공고 지역에서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신설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축물 해체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심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협의체 활성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부서 간 사업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 조항 신설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 신설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7. 10. 고시)에 대하여 도시재생패러다임과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활성화계획 구역을 변경하고 중점재생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박호근 의원이 발의한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와 LH공사가 2021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성호 공설시장 및 행복주택 부지의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6층 주차장, 지상 1~2층은 공설시장, 3층은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지상 4층 부터는 행복주택 건립 예정 이나 (주)금성/에덴에서 기부채납 하는 공원 부지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과 함께 지상에 공원 부지가 건립될 예정인데 공간활용에 있어 비효율성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 성남시와 LH공사가 2021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성호 공설시장 건립 계획과 맞춰 지하 6층의 주차장을 확대하고 성호 공설시장 1층을 주차장 부지와 통합하여 확장하며 2층의 경우 지상공원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 택】 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임정미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에정구역 내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징구함에 따라 주민의 혼란 발생 및 주민 간 과열 경쟁 등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 축소, 종교시설 및 보육 시설 폐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채 택】** 하였습니다.

- 열번째, 김영발, 박광순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2019.3.08.)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주민 편의성 증대 및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사전 예방의 필요성 절실하여 개정하는 것이나 토의를 거쳐 “부 결” 하였습니다.

- 열한번째, 김명수, 조정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2019.3.08.)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성남시 공동주택이 230개단지, 1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지 25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각종문제에 직면해 있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 결” 하였습니다.

- 열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2019.3.08.)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민선 제7기 공약사항인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 및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지원시설 확대 요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개정안 반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사항이나 “부 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호 근